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144 |
|----------|------|

제출년월일 : 2010. 3.
제 출 자 : 정상교 의원 외 7명

1. 개정취지

충주시 체육시설의 부대시설 사용료를 조정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용에 기여코자함.

2. 주요내용

일반 이용자에 대한 부대시설(농구대, 배구 지주대, 핸드볼 골대, 배드민턴 지주대)의 사용료 폐지

3. 입법예고결과

- 시민 의견 : 접수된 의견 없음
- 충주시 의견
 - 부대시설사용료(농구대 대여, 배구 지주대, 핸드볼 골대, 배드민턴 지주대)를 전용사용시에만 부과되도록 명시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붙임 : 1.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끝.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부대시설 사용료중 농구대 대여, 배구지주 대여, 핸드볼 골대, 배드민턴 지주를 다음과 같이한다.

| 종별 구분 | 사용단위 | 금 액 | 비 고 |
|----------|-------|---------|-----------|
| 농구대 대여 | 1회 1조 | 10,000원 | 전용사용자에 한함 |
| 배구지주 대여 | 1회 1조 | 5,000원 | 전용사용자에 한함 |
| 핸드볼 골대 | 1회 1조 | 5,000원 | 전용사용자에 한함 |
| 배드민턴 지주 | 1회 1조 | 5,000원 | 전용사용자에 한함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안건은 2010. 3 . 17 일 심종섭 위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 1143 호로 접수,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사망한 군경의 유가족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어 오신 분들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확대 지원하고, 지원대상자의 연령제한 없이 지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서 유가족의 범위를 전쟁중 사망한 군경의 유가족으로 한정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유가족까지 확대 지급함(안 제2조 제2항, 제3조)
- 나. 65세 이상에 적용하던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연령제한 폐지(안 제3조, 제4조)
- 다. 지급대상을 충주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자로 하는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 (안 제4조)
- 라.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조항 신설(안 제8조, 제9조)
- 마. 이 조례는 2010. 7. 1부터 시행함(안 부칙)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4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사전절차 이행

- 입법예고 : 2010. 2. 26~ 2010. 3. 17(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본청 및 각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 예고결과 : 접수된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가족의 범위를 전쟁중 사망한 군경의 유가족으로
한정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유가족까지 확대지급하고

65세 이상에 적용하던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연령제한 폐지하고

지급대상을 충주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자로 하는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하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조항을 신설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에 대한 조치를 하는 사항임

-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
국가에서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지급을 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연령은 65세이상 거주기간은 1년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은 시·군이 14%이고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는 시·군이 12%정도됨
지급대상에 유족까지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파악되지 않는 상황임
- 참전유공자 사망시
국가에서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 규정에 의해 안장지원자를 제외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장제보조비를 지급을 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시·군은 23%정도 되고 있으나
- 참전유공자 지원과 관련하여 연령제한이나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시, 군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고

유족에 대한 지급도 지급대상 유가족을 시행 시점인 2010. 7. 1일 현재 국가보훈처의 수급권자만 유족으로 인정 지급하면 약100명 정도로 많은 재정부담도 되지 않고 그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보상하게 될 것임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사망한 군경의 유가족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 오신 분들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게 미약 하나마 금전적 보상을 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애국애족 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대로 유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거주기간과 연령에 제한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2010. 3 .17일 정상교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 1144호로 접수되어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충주시 체육시설의 부대시설사용료를 조정하여 이용자
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체육시설이용을 활성화 하고 주
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용에 기여코자함.

2. 주요골자

일반 이용자에 대한 부대시설(농구대, 배구 지주대, 핸드볼
골대, 배드민턴 지주대)의 사용료 폐지

3. 근거법령 : 없음

4. 사전절차 이행

- 입법예고 : 2010. 2 . 24 ~ 2010. 3. 15(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본청 및 각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 예고결과 : 접수된 의견 없음

징수하고 있으나

대다수 시,군에서는 부대사용료는 체육활동과 직접보완적인 관련이 없는 조명, 냉난방, 전광판 등에 한해서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소액이면서 이용자의 불만을 사고 있는 운동종목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대시설 사용료를 조정하여 불만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안에는 일반 이용자의 농구대, 배구 지주대, 핸드볼골대, 배드민턴 지주대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폐지하고,

전용사용자에게만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전용사용자와 일반이용자 모두 운동(체육)종목과 직접 보완적 관계가 있는 농구대, 배구지주대, 핸드볼골대 배드민턴 지주대등의 부대시설 사용료를 폐지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의 체력증진과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 시키고
주민의 여가활용에 도움 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체육시설이용을 활성화 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용에 기여 하고자 충주시 체육시설의 부대시설 사용료를 조정하는 사항임

현재 체육시설 이용자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 여가시간 활용 및 스포츠활동을 위해 체육관 등에서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농구대, 배구 지주대, 핸드볼 골대, 배드민턴 지주대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부대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용사용이 아니고 개인별, 팀별로 짧은 시간 사용하는 경우 시설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이중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이용자와 수시 다툼이 발생하고 많은 분들의 불만 사항 입니다

타 시군의 경우 일부 시군에서 1회에 농구대, 배구지주대는 5,000원에서 20,000원을 징수하고 배드민턴 지주대와 족구대등은 극히 몇몇 시군에서

③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2010. 3. 1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 1135호로 접수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인구 및 세대수가 증가되거나 감소된 지역과 마을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통, 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통, 반 관리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함.

2. 주요골자

- 인구 증가지역 및 주민불편 지역 통반 증설
 - 연수동 주공7단지아파트 신축(498세대) : 2개통 12개반 증설
 - 호암동 호암3통(관주.도장골) 분통 : 1개통 증설
 - 달천동 용관1통(관산.두담마을) 분통 : 1개통 증설
 - ▶ 대동계, 마을회관(경로당) 별도운영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공동체 생활권역으로 통 설치
 - 주덕읍 신양리 진아타운(60세대) : 2개반 증설
- 인구 감소지역 합통 및 공부(조례) 정비
 - 호암동 11통(107세대), 12통(76세대) 합통 : 1개통 폐지, 세경독신자아파트(12통) 세대수 감소
 - 조례정비 : 교현 45통(중흥s클래스아파트) 2개반 증설
- 아파트 명칭변경 : 호암동 호라아파트 → 호암리버빌아파트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4. 사전절차 이행

- 입법예고 : 2010. 2. 2 ~ 2010. 2. 24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본청 및 각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 예고결과 : 접수된 의견 없음
- 조례규칙심의 위원회 개최 : 2010. . .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인구 및 세대수가 변동되고 마을환경의 특수성으로 불 편을 겪고 있는 지역의 통·반을 리·통반 설치기준에 맞게 4개통 증설하고, 1개통 폐지 16개반 증설하여 주 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아파트 입주로 인구와 세대수가 증가한 연수동 주공 7단지아파트(498세대)에 2개통 12개반과 교현동 중 흥S클래스아파트에 2개반을 증설하고
- 2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된 지역으로 마을별로 마을회관, 경로당, 대동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호암직동 호암3통의 관주골과 도장골을 분통하여

④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2010. 3.1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 1136호로 접수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10.01.01 공포 · 시행)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고
-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라 시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 · 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을 준용토록 되어있으나, '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09년 한시적으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10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인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6.1)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국민 세부담 완화를 지속 적용하고자 함

관주골을 호암3통으로, 도장골을 호암12통으로 하고

달천동 용관 1통인 관산, 두담마을을 분통하여
관산마을을 용관 1통으로 하고 두담마을을 용관4통으로 함

또한, 거주인구 및 세대수가 감소하고 통장이 장기간 공석
상태인 호암직동 세경독신자아파트 호암12통을
인근 통인 호암11통과 합통하여 주민불편해소와
행정서비스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내실 있는 통·반
운영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통·반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개정된 지방세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영세농가 지원과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가 폐지되고 주민세와 과세대상이 유사한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개인 및 법인에 균등하게 부과하는 균등할과 재산할을
주민세로 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및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신설 개편함

○ 개정안의 내용은

안 제15조와 제15조의 2는 주민세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과 세율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통·폐합됨으로 이에
따른 재산분 주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
고사항에 관한 규정과 개인과 법인의 균등분 주민세와
재산분의 세율을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6조의 2와 제16조의 3 및 제16조의 4는 신설되는
지방소득세의 세율,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종업원분의 납세자의무자 신고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안 제29조 내지 안제38조는 농업소득세 폐지에 따른
조례를 삭제하는 사항이고

안 제60조 내지 안 제63조는 사업소세 폐지에 따른
조례를 삭제하는 사항임

2. 주요골자

- 시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함
-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함
- 조례 제916호로 개정된 부칙 제2조의 적용기한 1년 연장

3. 근거법령 : 지방세법

4. 사전절차 이행

- 입법예고 : 2010. 1. 29 ~ 2010. 2. 18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본청 및 각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 예고결과 : 접수된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주민세를 재편성하며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시세의 세목조정과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폐지된 세목인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를 조례에서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009. 6. 1조례 제 916호로 공포된 부칙 제2조의 개정은 현재 도시계획세가 공정시장가액 비율(토지 및 건물의 70%, 주택 60%)의 1,000분의 1.4로 납세자의 부담이 커 지방세법 개정 전까지 세부담을 인하하고자 한 시적으로 규정한 사항이나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2010. 6. 1일까지도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 조례 57조의 개정 세율 적용을 2010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조례개정표준안에 맞게 개정되는 것으로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계획세의 부담을 완화 시킬 것으로 판단됨

⑤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2010. 3. 1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 1137 호로 접수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충청북도 세정과-15068(2009.12.01)호에 의거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과세형평성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한다. (제7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 나. 화물 적재공간 바닥면적 $2m^2$ 미만 차량에 대하여 화물차 이면서 승용차로 과세되는 문제 개선
⇒ 화물차 세액적용(제18조의 2)

3. 근거법령 : 지방세법

$2m^2$ 미만 차량은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2006년부터 2009년 까지는 화물자동차세율을 유지하고

2010년도는 화물자동차세액에 승용자동차세액과 화물자동차세액간 차액의 33%를 합한 금액을 부과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안전부 2010년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법 중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항 개정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차량의 자동차세를 행정안전부의 시세감면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사전절차 이행

- 입법예고 : 2010. 1. 26 ~ 2. 16 (20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2010. 3. 9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종전 사업소세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에 통합되고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신설되어
법령에 맞게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에
대해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7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는 지방의료원, 지방공사,
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한 “사업소세의 감면규정”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하는 사항이고
- 안 제16조는 주차장 전용 건물 등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주민세 재산분으로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임
- 안 제18조의 2는
2005년까지 화물자동차로 분류되던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⑥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2010. 3. 1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 1138 호로 접수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수수료 등 납부방법을 현금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
- 사실확인서 발급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80호)에 따른 부양사실 증명 및 가축자가사육 사실확인서 발급 폐지와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지방세납세증명서 수수료 무료화를 반영하는 한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화업 및 비디오물에 관련된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
- 소음·진동규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음·진동배출 시설 설치 허가 신청 및 신고(변경 포함) 수수료 조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방법에 신용카드 추가(안 제5조 제2항)
- 사실확인서 발급지침 폐지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안 별표 1)
 - 부양사실 증명 발급(400원/통) 폐지에 따른 삭제
 - 가축자가사육 사실확인원 발급(500원/통) 폐지에 따른 삭제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800원/건) 무료화에 따른 삭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영화업 및 비디오물에 관련된 업무 수수료 신설(안 별표 1)
 - 영화업자 신고 수수료 : 20,000원/건
 - 영화업자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건
 - 영화업자 신고증 재교부 수수료 : 5,000원/건
 -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건
 -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건
- 소음 · 진동규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음 · 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 및 신고 수수료 신설(안 별표 1)
 - 소음 · 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 수수료 : 10,000원/건
 - 소음 · 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 수수료 : 5,000원/건
 - 소음 · 진동배출시설 변경 신고 수수료 : 없음

3. 근거법령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 14조
-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7조, 제61조, 제90조
- 소음 · 진동규제법 제 8조, 제53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되어 영화업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영화업자 신고증 재교부,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 신고 등의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가 처리하도록 되어 별표1의 제2호 나목 “문화공보관계” 17)부터 21)까지 4개항을 신설하고 수수료는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어 충청북도에서 책정했던 것과 동일하게 하였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에 관한사항은 법령에서 정하여 징수하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소음·진동 규제법」이 개정되면서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변경신고 수수료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도록 되어 별표1 제2호 다목의 “보건사회관계”를 “보건환경관 관계”로 개정하고 같은 호 같은 목에 24)를 신설하고 수수료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치허가 10,000원, 설치신고 5,000원, 변경신고는 무료로 정하는 사항임

- 본 개정안은 시민편의를 위해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예규의 폐지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항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는 사항으로 큰 문제점은 없으나

4. 사전절차 이행

- 입법예고 : 2010. 2. 12 ~ 2010. 3. 2(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본청 및 각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 예고결과 : 접수된 의견 없음
- 조례규칙심의 위원회 개최 : 2010. 3. 9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의 현금 납부방법을 현금 뿐만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자치부의 사실확인서 발급지침 폐지 및 법령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내용은

사실확인서 발급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80호)에 따라 발급되는 부양가족사실 증명 및 가축자가사육 사실확인서는 사실확인서 발급지침이 폐지되어
별표 1의 제1호 나목 부양사실증명과
별표 1의 제2호 라목 ④가축자가사육 사실확인원을 삭제하고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무료발급도록 2009. 9. 21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별표1 제1호 사목 1)지방세납세증명을 삭제함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 관련 신고에 관한사항은

⑦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2010. 3. 1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 1139 호로 접수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종전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고, 국안단의 연주 수준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단원의 규모 확대와 자격 및 전형과 위촉의 방법을 규정하고 정기평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연에 따른 입장료 및 외부출연수입금 세입근거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단원을 55명 이내로 구성하되 상임단원 40명 이내, 비상임단원 15명 이내로 규모를 확대(안 제2조)
- 나. 단원의 자격을 관련학과 4년제 대학이상 교육을 받은 자 또는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활동경험이 있는 자로 함 (안 제5조)
- 다. 단원은 공개전형을 통한 위촉을 원칙으로 함(안 제7조)
- 라.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기평정을 실시(안 제9조)
- 마. 공연 및 외부출연수입금을 시의 세입으로 함 (안 제25조, 제26조)

“부양가족 사실확인”과 “가축자가 사육 사실확인”은 2007. 2.28 행정자치부가 사실확인서 발급지침을 폐지하면서 해당부처에서 적법한 규정등을 마련하여 민원을 처리하도록 지시된바
위 항목 삭제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등은 없는지를 충분히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본 조례는 제증명등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수수료가 없는 별표 2항 다목 보건환경관계의 24호 소음.진동배출 시설 중 다호의 “변경신고”는 삭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요예산은 33명인 현재 연간 682백만원, 40명 910백만원(증 228백만원), 55명 1,210백만원(증 52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안 제5조의 단원의 자격은 정규교육 이수자 및 전문 지식이 있는자에서 관련학과 4년제 대학이상 교육을 받은자나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활동경험이 있는자로 구체화 및 자격을 강화하는 사항임
- 안 제6조의 공개전형제 도입과 제9조의 평정제도는 새로 도입하는 것으로
공개 전형을 거쳐 위촉함으로 위촉과 관련된 잡음을 해소하고 년1회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을 실시함으로 단원의 자질과 기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은 좋으나

신설되는 사항이고 평정결과에 따라 재위촉에서 탈락 될 수도 있어 단원들의 불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이해와 설득으로 불만이 표출되지 않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전형과 평정이 될 수 있도록 전형방법과 평정기준마련, 평정심사위원 선임 등이 중요 하다할 것임

- 안 제8조의 결격사유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사유만 규정 하였으나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4. 사전절차 이행

- 입법예고 : 2010. 1. 29 ~ 2. 18 (20일)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2010. 3. 9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충주시 우륵국악단 상임단원 복무규정” 중
일부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국악단의 연주 수준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단원의 규모
확대와 정기평정제도를 도입하여
공연에 따른 입장료 및 외부출연 수입금의 세입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2조는 우륵국악단의 인원을 수준높은 연주와
악기별 화음을 고려하여 상임단원 20명과 비상임 15명 등
총35명을 상임단원을 40명으로 증원하여 총 55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시 . 군은

| 시.군 | 청주시립 국악단 | 영동군 난계국악단 | 여수시립 국악단 | 안산시립 국악단 |
|-----|-------------|--------------|-------------|-------------|
| 명 | 36 | 33 | 45 | 48 |

으로 구성되었고

- 안 제11조 내지 제17조와 제20조 내지 제24조는 종전의 우륵국악단 상임단원 복무규정의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음
- 안의 중요내용을 살펴본바와 같이 품격 있는 우륵국악단을 구성하기 위해 단원을 몇 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것인지 단원 위촉시 제척사유에 공연법, 방송심의규정등에 의하여 출연 정지처분중에 있는자를 포함할지 여부, 외부출연료 징수기준 규정여부, 안 제25조에 입장료 징수에 관한 규정은 두면서 어린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입장료 면제에 관한 규정은 없어 이를 규정할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공연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등을 위반하여 출연정지 처분등을 받은 경우 방송등에 출연할 수 없음으로 추가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할 것임

○ 안 제25조의 입장료 수입은

현재는 국악인의 저변확대와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상설공연등을 무료로 하고 있으나 유료를 필요로 할 경우를 대비하여 입장료는 시장이 공연별로 정하고, 무료초대권 발행은 발행매수의 10%이내, 입장권을 위탁판매 할 경우 위탁수수료 등 입장료 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26조 외부출연 수입금은 시에서 주관하는 연주이외 출연하는 경우 출연료 징수와 운영에 관한사항으로

현재는 징수 규정이 없어 외부출연기관에서 격려금을 받을 경우 비상임 지휘자의 수당, 객원출연자의 출연금, 무용수의 의상 대여료, 단원들의 후생복지 등에 사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출연료 징수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외부출연료를 징수하여 시 세입으로 하고, 출연료의 60% 이내 금액을 세출예산에서 특별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

다만, 외부출연을 할때 어떠한 경우에 얼마나 징수 하여야 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으로 외부출연료 징수기준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